KDA
KOREAN DENTAL ASSOCIATION

국민건강을 생각하는 치협, 국민과 함께하는 치협

대 한 치 과 의 사 협 회

수 신 각 지부

참 조 보험이사

제 목 「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」 일부 개정 고시 안내

---

1. 귀 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고용노동부에서는 치과보철료 중 지르코니아 크라운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「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」 일부 개정(고시 제2019-80호)을 고시한바, 별첨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귀 지부 소속 회원분들에게 홍보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

= 아래 =

□ 주요 개정 내용(발췌)

▲ 치과보철 급여 확대

- 치과보철 항목으로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신설, 수가(502,380원)

▲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기준 변경에 따른 규정 정비

- 카-17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이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어 삭제

붙임 : 관련고시 1부. 끝.

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김 철 수

담 당 황정훈 차 장 김은애 부 장 남궁원 국 장 유희대

협조자

시 행 보험69,102-1264 (2019. 12. 30) 접 수 ( )

우 04802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 / http://www.kda.or.kr

전화 (02)2024-9160 / 전송 (02)468-4655 / kda6324@hanmail.net / 비공개

「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」 일부 개정 고시

고용노동부고시 제2019 - 80호

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의한 "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"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9년 12월 27일

고 용 노 동 부 장 관

주요 개정 내용(발췌)

2) **치과보철 급여 확대 (안 별표 제1절)**

- 치과보철 항목으로 **지르코니아 크라운**을 신설하여 11개 항목에서 **12개 항목**으로 확대하고, 수가**(502,380원)**를 지원

6)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기준 변경에 따른 규정 정비

가.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(안 별표 제1절) 및 기립경사훈련(안 별표 제15절)

○ **'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('19.1.1.)과** 기립경사훈련('19.9.1.)' **비용이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어 관련 규정 삭제**

부 칙<2019.12.27.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**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**한다.

제2조(종전의 요양에 대한 경과 조치) 이 고시 시행 전 행한 요양의 요양급여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.

[별표]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

제1절 치과보철

[진료원칙] <개정 2010.4.27., 2019.12.27.>

1. 보철재료는 금합금, 팔라디움합금, 코발트 크롬합금 **또는 지르코니아**를 사용한다.
2. 보철재료대, 행위진료에 대한 가산율 및 보철진료 중 실시한 국소마취료는 별도 계산하지 아니한다.
3. 보철시행시 산재로 인한 것이 아닌 환부(결손치 등)가 있을 때 환자가 희망하면 본인부담으로 할 수 있다.
4. 보철설계시행시 같은 조건의 두가지 설계방법중 하위의 가격으로 기능회복이 가능한 것을 상위가격으로 할 수 없으며, 보철재료중 귀금속은 비귀금속에 과민반응이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.
5. 가공치는 인접지대치에 시행된 보철방법을 준용하여 수가를 산출한다.
6. 보철은 총2회에 한하여 지급하되, 2회째 보철은 최초 보철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지급한다. 다만, 의학적 소견이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5년경과 이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.

[보철원칙] <개정 2010.4.27., 2014.3.31., 2015.12.30., 2016.12.30., 2019.12.27.>

1. 분류번호 카-1: 주조금관의 금합금 비례는 75wt.% 이상의 금과 백금족 원소를 함유한 치과주조용 금합금으로 하며, 구치부에 적용할 수 있다.
2. 분류번호 카-2: 4분의 3 금관의 금합금비례는 75wt.% 이상의 금과 백금족 원소를 함유한 치과주조용 금합금으로 하며, 전치부 및 소구치부에 적용할 수 있다.
3. 분류번호 카-3 및 카-4: 도재전장주조관은 심미적 회복이 요구되는 전치부 또는 소구치부에 적용하되, [진료원칙]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   - ○ 귀금속은 금 77.8~87.5%, 백금 4.0~9.1%, 팔라디움 5.5~9.9%의 조성비를 가지면서 백금의 순도는 97% 이상이어야 한다.
4. 분류번호 카-5: 국소의치는 고정성 가공의치로는 그 기능 회복이 어려운 경

우에 적용하여야 한다.

○ 백금가금은 순금 70%, 은 10%, 동 10%, 백금 10%의 비율로 하면서 백금의 순도는 60% 이상이어야 한다.

5. <삭제>

6. 분류번호 카-9: 포스트(캐스트코아)는 전치부 또는 구치부에서 치관부의 3분의 2 이상이 파절되거나 그 손상이 심하여 치관부에서 인공치관의 유지가 곤란한 경우 또는 치경부를 포함한 우식증이나 불규칙한 파절을 치수치료한 경우에 지대치를 보강하기 위하여 적용한다.

○ 사용재료는 팔라디움이 25%이상인 팔라디움·은합금으로 한다.

7. 분류번호 카-10: 포스트(기성품)는 치관부의 3분의 2 미만이 파절되거나 손상되어 치수치료한 치아로써 잔존치질이 부족하여 사용 중 파절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대치를 보강하기 위하여 적용한다.

8. 분류번호 카-11, 카-12 및 카-13: 악안면보철은 구개부 및 악골절재 등으로 생긴 실질결손에 대해 그 기능과 형태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적용하며, 보철물의 사용재료는 유치악의 경우는 국부의치에 준하고 무치악의 경우는 총의치에 준한다.

9. 분류번호 카-14: 보철완료시까지 임시적으로 치아를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한다.

10. <삭제>

11. 분류번호 카-18: 지르코니아 크라운은 심미적 회복이 요구되는 전치부 또는 소구치부에 적용하되, [진료원칙]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o 사용재료는 순수지르코니아(ZrO_2)에 약3~5% 정도의 안정화제(stabilizer)를 첨가하며, 국제 표준화 시험법(ISO 6872, ISO 13356, ISO 10993)에 적합하여야 한다.

[치과보철료] <개정 2006.2.28., 2007.3.6., 2008.12.31., 2010.4.27., 2011.12.30., 2014.3.31., 2015.12.30., 2016.12.30., 2018.12.27., 2019.12.27.>

분류번호	분 류	금액(원)
카-1	주조금관	425,000
카-2	3/4금관	311,640
카-3	도재전장주조관(귀금속)	502,380
카-4	도재전장주조관(비귀금속)	347,650
카-5	국소의치(백금가금주조)(1악)	1,718,470
카-6	삭제<2014.3.31.>	
카-7	삭제<2015.12.30.>	
카-8	삭제<2014.3.31.>	
카-9	포스트(캐스트코아)	150,260
카-10	포스트(기성품)	103,510
카-11	악안면보철(귀금속: 유치악)	1,677,290
카-12	악안면보철(코발트크롬: 유치악)	1,179,780
카-13	악안면보철(코발트크롬: 무치악)	1,487,000
카-14	임시레진관	26,710
카-15	삭제<2014.3.31.>	
카-16	삭제<2014.3.31.>	
카-17	**삭제<2019.12.27.>**	
카-18	**지르코니아 크라운**	**502,380**

※ 재료대와 기술료를 합한 금액임